

#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2011. 6



# 북한의 여성권 · 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2011. 6

---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규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문제 제기 .....	1
II.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3
1. 주요 내용 .....	3
2. 특징 .....	7
III. 법 제정의 의의: 관련 선행 법령 및 인권 협약과의 비교 .....	10
1. ‘여성권리보장법’ .....	10
2. ‘아동권리보장법’ .....	17
IV. 배경 및 정책적 시사점 .....	24
부록1 .....	26
부록2 .....	39



## I. 문제 제기

-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권 상황이 보다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 이후 소수의 특권층,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
- 소수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태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열악한 편이며 특히 식량권, 건강권, 신체적·정신적 보호권 등의 실태에서 나타남.
  - 여성권에 있어서는 남존여비의 가부장제, 가족부양을 위한 과도한 노동과 건강악화, 성폭력(인신매매·성폭행·성매매·가정폭력) 등
  - 아동권에 있어서는 만성적 기아와 영양실조, 약물(마약) 남용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정환경 박탈 및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꽃제비 증가,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사법권 유린, 건설현장 노력동원 및 농촌 지원 등의 ‘의무노동’, 무상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교육권 유린 등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여성권리보장법’(이하 여성권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하 아동권보장법)을 채택 및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부문법 제정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과 아동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
  -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남녀평등

을 보장하며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sup>1)</sup>

- 두 부문법 제정은 여성 및 아동 권리와 관련해 다른 법령들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단일 법안으로 체계화하였다는 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음.
- 실제에 있어 여성권보장법·아동권보장법 제정이 기존의 관련 법령을 보완 내지 보장하여 여성과 아동의 인권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밝힌대로 법 제정의 의의가 구현된다고 할 때, 두 부문법 제정은 보다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됨.
-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의의를 갖는 여성권보장법과 아동권보장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의 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해 두 부문법의 의의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여성 및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을 도출해 내고자 함.

---

1) 『민주조선』, 2011. 1. 26.



## Ⅱ.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1. 주요 내용

#### 가. ‘여성권리보장법’

- 여성권보장법은 총 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제1조~제10조), 제2장 ‘사회정치적 권리’(제11조~제17조),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제18조~제25조), 제4장 ‘로동의 권리’(제26조~제35조), 제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제36조~제43조),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제44조~제51조), 제7장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2조~제55조)
  
- 제1장에서는 여성권보장법의 ‘사명’이 여성의 권리 보장을 통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제고에 있음을 밝히고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 규정들을 명시함.
  -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여성권리 보장,
  -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기관·기업소·단체,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근로단체, 법기관 등의 여성권리 보장 의무와 국제교류 및 협조,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등을 규정

- 제2장에서는 여성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명시함.
  - 남성과 평등한 선거권·피선거권 및 국적 취득·변경·보존 권리,
  - 국가기관에서의 사업권리 및 여성 간부의 계획적 양성·등용과 간부 선발에서의 차별 금지, 법기관에서의 여성 인격 존중 및 권리와 이익 보장,
  - 여성의 신소와 청원 권리 등을 규정
- 제3장에서는 교육·문화·보건 분야에서의 여성 권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명시함.
  - 입학·진학·졸업 후 배치에서 남녀평등 보장,
  - 여학생의 신체와 건강 보호 증진 및 의무교육 관련 부모의 의무,
  - 여성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조건 보장 및 남성과 평등한 문화생활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 농촌여성들의 교육·문화·보건의 권리 보장 등을 규정
- 제4장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명시함.
  - 여성들의 노동조건 보장 및 노력배치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
  - 여성근로자의 노동 보호 및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 분야와 직종 구분
  - 노동보수와 기술·기능자격 및 금수판정에서의 남녀평등,
  - 산전·산후 휴가 보장과 부당한 제적 금지 및 사회보험제 적용 등을 규정
- 제5장에서는 인신 및 재산적 권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명시함.
  - 여성 인신 및 여성 건강·생명의 불가침권,
  - 여성 유괴·매매 및 매음행위 금지와 여성의 인격권 및 명예권 보장,
  - 가정 재산 소유권을 남편과 공유할 권리 및 남성과 평등한 재산 상속권 등을 규정

- 제6장에서는 결혼 및 가정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명시함.
  - 여성의 자유 결혼 권리와 여성에 대한 가정폭행 금지,
  - 이혼 제기 중지 사유와 이혼시의 재산 분할,
  -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권리·의무와 출산의 자유 및 임산부 보호 등을 규정
- 제7장은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규정들로 구성됨.
  -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및 여성단체의 임무,
  -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및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등을 규정

#### 나. ‘아동권리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은 총 6장 62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제1조~제10조),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11조~제21조), 제3장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22조~제37조),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38조~제46조),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제47조~제56조),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제62조)
- 제1장에서는 이 법의 ‘사명’이 아동권리보장제도의 공고 발전을 통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최대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규정들을 명시함.
  - 아동에 대한 정의와 아동의 평등권 보장 및 아동중시 원칙,
  - 교육·보건 분야와 가정 및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원칙,
  - 아동에 대한 물질적 보장 원칙 및 국제교류와 협조,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등을 규정

- 제2장에서는 사회생활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관련 규정들을 명시함.
  - 아동의 생명권과 발전권 보장,
  -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 및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권리,
  - 출생 등록 및 아동의 신원 보존 권리와 단체가입 및 자유로운 견해표시,
  - 아동의 사생활 및 가족·서신·명예·인격에 대한 법적보호와 아동 유괴·매매 및 아동노동 금지,
  - 아동의 신소·청원 권리와 망명아동 보호 등을 규정
  
- 제3장에서는 교육·보건 분야에서의 아동권리 관련 규정들을 명시함.
  - 교육·보건의 혜택 조건 보장 및 무료의무교육 권리와 아동 교육기관 및 아동의 입학과 졸업 보장,
  - 아동의 인격 존중 및 아동의 희망과 재능 발전 권리 보장,
  - 휴식과 문화정서생활 권리 보장 및 아동 관련 출판물·문예작품 창작 보급,
  - 장애아동 보호와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양육 및 외진 지역 아동 교육 조건 보장,
  - 무상치료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및 아동병원·병동 배치와 요양시설을 통한 아동 건강 증진,
  - 아동 영양제·영양식품 및 생활용품 보장 등을 규정
  
- 제4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관련 규정들을 명시함.
  -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
  -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및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 보장,

- 가정에서의 아동 의사 존중 및 처벌금지,
  - 후견인 선정과 아동의 수양 및 입양, 아동의 상속권 등을 규정
- 제5장에서는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관련 규정들을 명시함.
- 법기관의 아동권 보장 및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사형 금지,
  - 사회적 교양 처분의 적용 및 변호인 방조를 받을 권리,
  - 사건 취급 처리에서 아동 인격 존중 및 증인신문에서 아동의 보호자 입회,
  - 부모의 체포 및 구속을 아동에게 통지,
  - 아동 이익을 위해 부모 이혼 방지 교양 및 이혼시 아동양육과 아동의 양육비 등을 규정
- 제6장은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관련 규정들로 구성됨.
- 아동권리보장사업 지도체계 및 지도기관,
  - 아동보호 관련 연구사업 강화 및 아동보호사업 소요자금·자재·설비·물자 보장,
  - 아동 교육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관,
  - 아동권리보장사업 관련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등을 규정

## 2. 특징

- 각 조항의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관련 규칙 내지 법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겠음.
- 북한의 여성권보장법이 원용한 중국의 ‘여성권익보장법’<sup>2)</sup>은 보

2) 중국의 ‘여성권익보장법’은 1992년 4월 채택, 2005년 8월 개정됨.

다 구체적·세부적으로 여성의 권익보장 및 남녀평등을 조문화(條文化)하였으며 총9장 61조로 구성

- 대체적으로 여성 및 아동 관련 선행 법령들에서 주요 내용들을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보완 내지 구체화함.
  - 여성권보장법은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사회주의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민법, 형법, 가족법 등 선행 법령에서 관련 규정들을 재확인하고 여성권 보장 조치들을 구체화
  - 아동권보장법은 사회주의 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인보호법, 사회주의노동법, 형법, 가족법 등에서 관련 규정들을 재확인하고 아동권 보호 조치들을 구체화
- 그러나 두 부문법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선행 관련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함으로써 유엔의 여성권 및 아동권 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 및 개선 촉구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두 부문법의 ‘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조항에서 북한이 가입한 관련 국제협약은 국내법인 두 부문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제협약 이행의 의지를 부각, 과시함.
  - “여성권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여성권보장법제1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아동권리보장관련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아동권보장법제10조)

- 두 부문법의 ‘국제교류와 협조’ 조항에서는 여성권 보장과 아동권 보장에 있어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 협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여성권 및 아동권과 관련한 외부의 지적 내지 권고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국가는 여성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제9조)
  - “국가는 아동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제9조)

### Ⅲ. 법 제정의 의의: 관련 선행 법령 및 인권 협약과의 비교

#### 1. ‘여성권리보장법’

##### 가. 선행 법령의 여성 권리 및 보호 규정 재확인

- 여성권보장법은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가족법 등 여성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선행 법령들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있음.
-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국가·경제·문화·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포괄적 규정 아래 선거권·피선거권의 남녀평등,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 사회적 보험 및 교육에서의 동등한 권리 등을 천명함(제1조~제3조).
  - 여성권보장법은 선거권·피선거권·교육·문화·보건·노동 분야에서의 남녀평등과 인신 및 재산, 결혼 및 가정 권리 등에서 남녀평등을 규정
-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보호법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등의 편의시설 운영, 여성근로자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젖먹이 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야간노동 금지, 산전(60일)·산후(90일) 휴가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함.
  - 여성권보장법도 마찬가지로 규정



- 북한 형법은 매음죄(제261조), 유괴죄(제290조), 강간과 윤간죄(제293조)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부칙(일반범죄)은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제20조)와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제21조)를 처벌함.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에 대한 유괴, 강간, 윤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매음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
- 결혼 및 가정의 권리와 관련하여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여성들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으며, 가족법은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제18조).
  - 여성권보장법도 여성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지며,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나. 여성 권익 보호 및 권리 신장의 구체화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들의 권익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및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관·기업소·단체,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근로단체, 법기관 등의 여성권리보장의무를 규정함.
  - 선행 법령들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 부재
- 여성 차별 금지를 명시하거나 여성들의 특성 또는 편의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함.
  -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

- 교육기관은 여학생의 육체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며 여성을 위한 해당 시설을 갖출 것
- 기관·기업소·단체는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과학·기술·문학·예술·체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할 것
- 보건기관은 여성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갖출 것
- 성별, 또는 결혼, 임신, 해산 등을 이유로 하는 여성들의 노력배치 금지나 제한을 하지 말 것
- 여성들에게 정해진 노동안전시설과 노동위생시설을 갖추어주며 여성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노동안전을 보장할 것
-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젓먹이는 기간 등을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 것

#### 다. 다산 장려 및 다자녀 어린이를 둔 여성의 생활 보호 강화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들의 다산을 장려하며 세 자녀 이상의 어린이를 둔 여성의 생활 보호를 보다 강화함.
  - 국가적으로 여성의 다산을 장려
-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에게 생활비를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용근’<sup>3)</sup> 생활비를 준다고 규정(제20조)
  - 사회주의노동법은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비 지불에 대한 규정은 없음(제16조).

3) ‘용근’이란 “제대로 다 있는, 조금도 축나지 않은” 이라는 뜻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598.

- 여성권보장법은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생활비 전액 지불도 명시
-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에 대해 무상공급 물품 확대 등 특별 배려와 혜택 제공을 명시함.
  - 어린이보육교양법은 3명 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나면 옷과 포단, 젖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건강을 돌보도록 규정(제21조)
  - 여성권보장법은 3명 이상의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담당의사를 두며 살림집,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등을 무상 공급하는 특별 혜택을 규정

#### 라. 권리의 향유 주체로서 여성을 명시

- 여성권보장법은 북한 헌법과 신소청원법, 손해보상법, 상속법 등 선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의 향유 주체로서 여성을 명시하고 있음.
- 북한 헌법(제69조)과 신소청원법(제2조)은 ‘공민’이 신소 및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제250조)과 행정처벌법(제139조)은 신소를 묵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이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지며, 여성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
- 북한 헌법은 ‘공민’이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고 규정(제79조)하고 있고, 북한 민법은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 ‘공민’이라고 규정(제60조)하고 있으며, 손해보상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여 끼친 손해와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

통을 준 경우 손해보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제40조).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이 인신의 불가침권, 건강과 생명의 불가침권,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가지며,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인신 및 재산권을 가진다고 명시

○ 북한 상속법은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되는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의 상속지분은 동일하다고 규정함(제17조·제19조).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재산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북한 헌법과 신소청원법, 손해보상법, 상속법 등 선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민’에는 여성이 포함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권보장법이 권리의 향유 주체로 여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법 규정과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성들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마. 여성차별철폐협약 규정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일부 반영**

○ 북한당국은 여성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sup>4)</sup>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의 권리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하였음.

---

4) 정식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며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가입.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제6조).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결혼 또는 혼인중 남편의 국적 변경으로 아내의 국적이 자동 변경되는 것을 금지함(제9조 제1항).
  - 여성권보장법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명시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교육 분야에서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 취득에 있어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제10조).
  - 여성권보장법은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 후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고용 분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제11조 제1항).
  - 여성권보장법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함(제12조 제2항).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이 해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여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제14조 제2항).
  - 여성권보장법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대해 농촌여성들이 도시여성들과 동일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북한의 최초 보고서 심의(2005.7)에서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가정폭력 관련법을 도입할 것을 북한에 권고한 바 있음.
  - 여성권보장법은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기업소·단체에 대해 가정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전개하여 가정폭행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음.
  - 그러나 여성권보장법에는 가정폭행 피해여성 구제 및 보호 규정이 없고,

-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명시하지 않았는바, 가정폭행 근절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가 소극적임을 시사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치·사법·공직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여성권보장법은 여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각급 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 비율을 높일 것을 명시

## 2. ‘아동권리보장법’

### 가. 아동 ‘권리’ 신장 관점에서 관련 선행 법령을 집대성

- 그동안 아동 관련 내용이 사회주의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가족법, 사회주의노동법, 국적법, 인민보건법 등 관련 국내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아동의 ‘권리’ 신장 관점에서 아동권협약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집대성하고 있음.
  - 또한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선행 법령과 비교하여 아동의 권리 신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
- 아동의 생명권과 발전권, 신소와 청원의 권리, 아동의 인격존중, 망명 아동의 보호 등은 선행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국적법 제5조와 아동권보장법 제13조(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권리)에서 아동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이 동일함.

- 가족법(제3장 가정)상에서 이혼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권보장법은 제54조에서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이 새롭게 규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족법에서의 자녀 교양, 입양, 후견, 상속 등의 규정이 아동권 보장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가족법과 비교할 때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책임, 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가정에서 아동의 처벌 금지 등 권리 측면에서 새로운 규정 도입
  - 또한 가족법과 비교할 때 입양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아동권보장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혹은 후견인의 책임(제40조)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2011년 1월 19일 새롭게 제정된 ‘보통교육법’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는바,
  - 보통교육법은 맹아, 농아학교의 학생에게 국가가 장학금 지원(제14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맹아, 농아 등의 장애아동에 대해 국가가 교육과 생활조건 책임(제15조) 등을 규정,
  - 또한 학업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통교육기관을 분류하고, 그 중 하나로 ‘장애자 교육을 위한 맹·농아학교’(제19조 4항)를 명시하고 있으며,
  - 제25조 ‘맹·농아학교의 운영’(제25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아동의 노동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노동법의 규정에 명시된 관련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아동을 16살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회주의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에서는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



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가능 나이는 ‘16살부터’가 됨.

- ‘로동보호법’(2010.7)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나. 아동권협약의 반영: ‘권리’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독자 입법

- 북한이 유엔 아동권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아동권협약을 반영하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독자적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권보장법 제정의 적지 않은 의의가 있음.
  - 생명권과 발전권, 신소와 청원의 권리, 상속권 및 사법분야 등에서 권리 주체로서 아동을 명시
- 북한당국은 아동권보호법 제정을 통해 아동권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대부분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보임.
  - 아동권협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제2조~제3조)하고 있는바,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아동의 평등권보장(제3조)과 아동중시원칙(제4조)을 명시
  - 아동권협약에서 아동의 생명권과 생존 및 발전권 보장(제6조)을 강조하고 있는바,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
  - 아동권협약에서 교육(제28조~제29조)과 건강권(제24조)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권보장법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치료제를 바탕으로 교육과 보건분야를 독립장(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으로 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
  - 아동권협약에서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제19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동권보장법에서는 가정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제4장)이라는 별도의 장을 설정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조

- 아동권협약에서 장애 아동의 권리(제23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을 강조
- 아동권협약에서 난민의 지위를 받은 아동의 권리(제22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권보장법에서는 망명아동 보호(제21조)를 명시

- 또한 아동권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아동권보장법에 명시된 특이한 내용은 이혼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동권보장법에서 ‘이혼’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특히 제54조(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에서 이혼은 아동의 불행이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 이를 위해 이혼문제가 되는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 등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이혼하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규정

#### 다. 시민권과 자유권에 대한 유보적 입법 태도

- 아동권협약과 아동권보장법에서 아동에 대한 정의를 비교할 때 연령의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권협약은 18살 미만
  - 아동권보장법은 16살까지
  - 아동의 연령에 대한 정의는 북한의 다른 법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그러나 북한당국은 아동권협약에 근거하여 아동권보장법을 제정하면서도 특정의 권리에 대해서는 유보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아

동권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 중 북한당국이 아동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반영하지 않은 권리는 <표1>과 같음.

**<표 1> 반영되지 않은 아동의 권리**

아동권협약	아동권보장법
제14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미반영
제15조: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미반영 / 소년단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
제17조: 국내적·국제적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미반영 / 출판물·문예작품의 창작·보급을 명시
제33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이용되는 것 방지	미반영
제34조: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미반영
제38조: 무력분쟁과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 불가	미반영

- 위의 <표1>을 통해 아동권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보장법에 반영하지 않은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북한체제의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시민권과 자유권이 반영되지 않음.
  - 둘째, 북한 내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약,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음.
  - 셋째, 무력분쟁시 아동의 권리 및 징병 문제와 관련한 아동권협약의 조문을 반영하지 않음.
- 아동권협약(제32조3항)에서는 아동의 노동금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 혹은 제재수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권보장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은 아동에게 노동을 시킨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아동권협약(제37조)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권보장법(제47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건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라.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의 선별적 반영**

- 북한은 4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국제인권조약을 관장하는 규약위원회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오고 있음<표2참조>.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 대표단을 파견
  -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아동권위원회에 협력

**<표 2>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 현황**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일자	심의일자	국가보고서	제출일자	심의일자
최초보고서	2002.9	2005.7	최초보고서	1996.2.13	1998.5.19/ 6.5
2차보고서	2006.3.27 예정이었으나 미제출	미정	2차보고서	2002.5.16	2005.5.1
			3·4차보고서 (합본)	2007.12.10	2009.1.23/ 1.29

- 아동권위원회가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채택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아동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아동권위원회가 장애아동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아동권보장법 제40조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
  - 시민적 권리 및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의 관련 법이 아동권협약 제13~제17조에 명시된 권리(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자유로운 정보접근 등)를 보장하고 있는지 아동권위원회가 지적한 데 대해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바, 아동권보장법의 표현(견해표시라고 표현, 제16조), 프라이버시 보호(제17조) 등
  - 아동의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아동권위원회가 권고한 데 대해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성적 착취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행위 금지(제18조)로 규정
  - 아동권위원회가 자발적 군 입대, 자발적 입대의 최저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권고한 데 대해 아동권보장법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 IV. 배경 및 정책적 시사점

- 북한당국은 2009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인권보장 조항’(제8조)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는바, 체제에 부담이 없고 국제적으로 인권개선 의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 독립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여성권보장법과 아동권보장법은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와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당국이 보다 적극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함.
  -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의 최초보고서(2002.9) 심의 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 남녀 불평등한 사회참여 실태, 여성단체(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역할 및 기능,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신매매·성폭행·가정폭력·성매매) 등에 대해 우려하고 개선 촉구
  - 2009년 1월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의 제3·4차 통합보고서(2007.12) 심의 후, 아동의 건강권,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아동의 사법권 및 국적취득권, 착취 형태의 아동 노동, 교육권, 신체적·정신적 보호권 등에 대해 우려하고 개선 촉구
-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규탄 및 개선 촉구를 의식하여 이미 지 개선을 위한 의도성 있는 법제정일 개연성도 낮지 않다고 할 때, 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이행 촉구가 필요함.
  -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를 2006년 3월 27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6월 현재 미제출 상태
  - 2009년 1월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

(2002) 심의 후, 아동권위원회가 채택한 많은 권고사항들이 불충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조치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

- 또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에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를 다수 반영하고는 있으나 선언적 규정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상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동권보장법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민권과 자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법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북한당국이 아동권위원회에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동권보장법에 반영되지 않은 아동권협약상의 권리를 법 개정시 반영할 것을 촉구 하도록 아동권위원회에 권고
  -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관련 입법 준비를 촉구
- 취약계층과 소수자라는 점에서 향후 대북지원 과정에서 장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2003년 6월 장애인보호법(제3장 장애자의 교육)을 제정한 이후 북한당국은 아동 관련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교육, 취업 등과 관련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부록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309 호, 주체 99(2010)년 12 월 22 일

제1장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 1 조(여성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남녀평등의 원칙)

남녀평등을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

제 3 조(여성에 대한 사회적관심)

여성은 가정의 복리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4 조(여성권리보장계획)

국가는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 5 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권리보장사업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이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권리보장사업을 중요직능으로 정하고  
관할지역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근로단체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동맹은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여성동맹조직은 이 법과 여성  
동맹규약에 따라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직업총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은  
이 법에 따라 자기 조직에 속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8 조(법기관의 여성권리보장의무)**

법기관들은 각종 범죄 또는 범위반행위에 의하여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 9 조(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여성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10 조(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이 법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여성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여성권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 2 장 사회정치적권리

제 11 조(사회정치적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여성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여성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지위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12 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각급 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제 13 조(국적취득, 변경, 보존의 권리)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여성의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 14 조(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

여성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들을 여성일군을 적극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15 조(여성간부의 등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하여야 한다.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 조(사법분야의 보호)

법기관은 여성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며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17 조(신소청원의 처리)

여성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의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여성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 3 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 18 조(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에 대한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올바른 녀성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

제 19 조(입학, 진학, 졸업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후 배치받을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0 조(녀학생의 신체와 건가의 보호증진)

교육기관에서는 녀학생의 육체적특성에 맞는 교육을 주며 녀성을 위한 해당 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녀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시켜야 한다.

제 21 조(의무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의무)

부모 또는 후견인은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가 중등일반의무교육체계에 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병으로 앓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를 빠짐없이 취학시켜야 한다.

제 22 조(직업기술교육조건의 보장)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여성들이 직업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 23 조(문화생활의 권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4 조(치료받을 권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기관은 녀성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갖추고 녀성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며 여성들이 불편없이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들에게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25 조(농촌녀성들의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농촌녀성들이 도시녀성들과 똑같이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 제 4 장 로동의 권리

제 26 조(로동분야에서 녀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로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7 조(로동조건의 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여성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 28 조(로력배치에서의 차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을 받을 경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것을 이유로 여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여성을 받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 29 조(여성근로자의 로동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로동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정해진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시설을 갖추어주며 여성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로동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업무와 작업은 시킬수 없다.

여성들은 산전산후기간, 젖먹이는 기간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30 조(여성에게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

로동행정지도기관은 여성들에게 금지시켜야 할 로동분야와 직종을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들을 금지된 노동분야와 직종에서 작업시키는 행위, 젖먹이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1 조(노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노동에 대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3 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하루노동시간은 6 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 지불한다.

**제 32 조(기술, 기능자격 및 급수판정에서의 남녀평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자격, 기능자격, 급수판정을 할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3 조(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 일, 산후 90 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여성에게 일시킬수 없다.

**제 34 조(부당한 제적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 35 조(사회보험제의 적용)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병 또는 부상 같은 리유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여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치료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5 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제 36 조(인신 및 재산분야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인신 및 재산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여성의 인신 및 재산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37 조(인신의 불가침권)

여성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비법적으로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여성의 몸을 수색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38 조(건강, 생명의 불가침권)

여성은 건강과 생명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여성이라는 리유로 갓난 여자아이를 죽이거나 여자아이를 낳은 여성, 임신한 여성, 앓고있는 여성, 장애여성, 년로한 여성을 학대, 팔시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 개월부터 산후 7 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제 39 조(유괴, 매매행위금지)

누구도 여성을 유괴하거나 매매, 강간, 룬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여성에 대한 유괴, 매매, 강간, 룬간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그러한 행위를 한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하여야 한다.

제 40 조(매음행위금지)

매음행위를 한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매음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조장, 강박한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 41 조(여성의 인격, 명예존중)

여성은 인격권과 명예권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42 조(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

결혼한 여성은 가정재산의 소유권을 남편과 공동으로 가진다.

여성은 수입에 관계없이 남편과 평등하게 가정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여성은 남편과 리혼할 경우 자기의 개별재산권을 주장할수 있다.

제 43 조(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속권을 가진다.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 성별을 리유로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제 6 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 44 조(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5 조(녀성의 결혼자유권)

녀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녀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46 조(가정폭행의 금지)

가정에서는 녀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7 조(리혼제기중지사유)

부부간에 리혼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성은 안해가 임신중에 있거나 해산후 1 년안에 있다면 리혼을 제기할수 없다.

녀성이 남편을 상대로 리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리혼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주택과 가정재산분할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가 쌍방의 구체적실정에 근거하고 자녀와 녀자측의 리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해결한다.

제 49 조(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될수 없을 경우에는 녀성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50 조(출산의 자유)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녀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키우는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 51 조(임산부에 대한 보호)

녀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녀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산기의 녀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 7 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52 조(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 53 조(여성단체의 임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여성동맹조직은 여성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회적인식과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동맹조직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 54 조(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여성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55 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여성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307 년 주체 99(2010)년 12 월 22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 제 1 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 제 1 조(아동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다.

이 법에서 아동은 16 살까지이다.

#### 제 3 조(아동의 평등권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 제 4 조(아동중시원칙)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에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제 5 조(교육, 보건분야에서 아동권리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 11 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 6 조(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가정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 조(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아동은 사법분야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아동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 8 조(아동에 대한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 9 조(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아동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10 조(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리익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아동권리보장관련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 11 조(생명권과 발전권)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을 가진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해당 기관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 조(이름을 가질 권리,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권리)

다음의 아동은 출사이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1.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아동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4. 공화국령역에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 제 14 조(출생등록)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해당 거주지의 인민보안기관에 한다.

#### 제 15 조(아동의 신원보존)

아동은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관은 아동의 신원을 정확히 등록하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6 조(단체가입, 견해표시)

아동은 소년단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 제 17 조(사생활, 가족, 서신, 명예, 인격보호)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 제 18 조(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금지)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동을 유괴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 19 조(아동로동의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킨 행위를 할수 없다.

**제 20 조(신소, 청원의 권리)**

아동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의 신소, 청원을 제때에 접수하여 책임적으로 처리하며 그것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 조(망명아동의 보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공화국에 망명한 아동, 개별적으로 공화국령역에 들어온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 22 조(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할데 대한 요구)**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각과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은 아동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23 조(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제 24 조(아동교육기관)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이 마음껏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같은것이 속하며 사회 교육기관에는 도서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같은것이 속한다.

제 25 조(아동의 입학과 졸업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학력아동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켜야 한다.

아동교육기관과 부모는 아동이 학교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6 조(아동의 인격존중)

아동교육일군들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7 조(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

아동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아동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8 조(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

아동은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공원, 유흥장, 동물원, 식물원 같은 시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아동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 29 조(출판물, 문예작품의 창작보급)

출판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예작품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아동의 심리와 수요에 맞게 잘 만들어 보급하여야 한다.

제 30 조(장애아동의 보호)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똑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聋아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31 조(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 32 조(외진 지역의 아동교육조건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아동에 대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33 조(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 34 조(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한다.

병이 난 아동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아동병원, 병동의 배치)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 하여 모든 아동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 조(료양시설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료양시설을 잘 꾸리고 아동들이 적극 리용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온갖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37 조(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물자공급기관과 해당 상업기관, 교육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아동들에게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 제 38 조(가정에서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을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제 39 조(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에게 모범이 되면 그들에 대한 양육과 교양을 잘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

##### 제 40 조(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부모 또는 후견인은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 제 41 조(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조건보장)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42 조(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가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 43 조(가정에서 처벌금지)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 44 조(후견인의 선정)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아동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제 45 조(아동의 수양, 립양)

공민은 다른 사람의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있다. 이 경우 수양, 립양한 아동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아동의 수양, 립양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보호교양능력이 없는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다.

제 46 조(아동의 상속권)

아동은 상속권을 가진다.

해당 기관과 공민은 아동이라는 리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 47 조(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차례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48 조(아동에 대한 형사책임추궁 및 사형금지)

14 살에 이르지 못한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 살이상에 이른 아동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49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

14 살이상에 이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교양처분을 적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아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동과 차별하지 않는다.

제 50 조(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기관은 아동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의 방조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1 조(사건취급처리에서 아동의 인격존중)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 아동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강제적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52 조(증인심문에서 아동의 보호자립회)

법기관은 아동을 증인으로 데려다 심문할 경우 그의 부모나 후견인, 교원 같은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보호자의 립회없이 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수 없다.



제 53 조(체포, 구속의 통지)

법기관은 아동의 부모를 범죄자로 체포, 구속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체포, 구속의 이유와 구속장소 같은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54 조(리혼을 막기 위한 교양)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는 아동을 가진 부부리혼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리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 55 조(리혼시 아동양육)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 살아래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 56 조(아동의 양육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월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제 57 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 제 58 조(아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

국가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 제 59 조(자금, 자재, 설비, 물자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아동보호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물자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 60 조(아동의 교육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과 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을 위한 교육교양사업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 61 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아동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62 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아동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회원가입신청서</b>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 드 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 (우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통일정세분석 2011- 08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1년 6월
발행일	2011년 6월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